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1973 |
|----------|------|

2017년 9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9월 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

1. 제안이유

- 동물복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등 동물보호센터의 역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호비 규정을 개정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 신설에 따라 설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명시(안 제5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11항~제13항)

- 동물의 유실·유기 예방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근거 마련(안 제7조)
- 유기동물 보호 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고 지정기한을 명시(안 제8조 제3항, 제5항)
-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동물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 보호비용 징수 범위 명시(안 제16조)
- 적극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2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2) 예산조치 : 총 3,917,880천원 (5년간)

(단위 : 천원)

| 구분 | 1차년도 ('17) | 2차년도 ('18) | 3차년도 ('19) | 4차년도 ('20) | 5차년도 ('21) | 합계 |
|------|----------------|----------------|----------------|----------------|----------------|-----------|
| 소요비용 | 1,316,876 | 687,751 | 637,751 | 637,751 | 637,751 | 3,917,880 |

※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 운영관련 예산

3) 기타사항 : 없음.

4)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협의완료(원안동의)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 검토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해당없음.

5) 기 타

(1) 입법예고 (2017. 5.25. ~ 6. 24.) 결과 : 별도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붙임.

(3) 비용추계 등 자료 : 별도 붙임.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높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복지위원회를 확대하고, 유기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호비 규정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며, 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서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사업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임.

2 주요사항 검토

- 개정안(안 제2조)은 동물복지지원센터와 긴급보호동물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음.

<표>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2조)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생략) 1. ~ 4. (생략)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생략) <신설> | 제2조(정의)(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현행과 같음) 7. “동물복지지원센터”란 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분양,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

| | |
|--------------|--|
| <u>〈신 설〉</u> | 8. “ <u>긴급보호동물</u> ”이란 <u>소유자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 조치가 필요한 동물</u> 을 말한다. |
|--------------|--|

- 개정안(안 제2조)의 동물복지지원센터는 현행 동물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시설로써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각주 4번 참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과는 별도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역할인 긴급보호동물 관리 사업의 대상을 규정하여 그 역할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였음.
- 개정안(안 제5조제2항)은 합의제 자문기관인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의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소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표> 신구조문 주요 대비표(안 제5조)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 <p><u>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u>〈신 설〉</u></p> |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 <p><u>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u></p> <p><u>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u></p> <p><u>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p> <p><u>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u></p> | |

| | |
|---------------------------------------|---|
| <p><신 설></p> <p><신 설></p> | <p><u>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p> <p><u>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p> <p><u>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p> <p><u>⑫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u></p> <p><u>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복지관련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u></p> |
|---------------------------------------|---|

○ 개정안(안 제5조)은 2014년 4월 수립한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에 따라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민간단체 및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제3항은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고, 안 제5조제11항은 위원의 해촉사유와 같은 조 제13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¹⁾을 근거로 동물보호과장을 위원회 간사로 두는 내용을 신설한 것임.

○ 개정안(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법 제2조 제2호²⁾ 및 법 시행령 제3조³⁾)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을 규정하고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2)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2.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있는 현행 조례(제7조)가 법 시행규칙(제8조)을 단순 반복 명기하고 있는 바, 불필요한 조문인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새로이 조례에 명시하였음.

<표> 신구조문 주요 대비표(안 제7조)

| 현행 | 개정안 |
|---|--|
| <p>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p>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p> | <p>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 또는 장소를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p> <p>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

3)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16.8.11>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별지 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
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
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
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
여야 한다.

- 법(제13조제3항)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서는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출입을 조례로써 정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서울광장과 청계천, 서울대공원 및 어린이대공원의 동물원 내부를 자체 내규를 통해 애완동물 출입금지지역 등으로 정하여 출입을 금하고 있는 등 현행 조례에서 미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평가됨.

동물보호법 제13조 제3항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안(안 제8조제3항)에서는 센터 지정 시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고, 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민간단체나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법(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음.

<표> 신구조문 주요 대비표(안 제8조)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u><신설></u> |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 이는 상위법(제15조제9항4)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절차를 서울

4)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절차 및 방법의 투명성 및 센터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안 제8조 제5항)은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에 있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현행 “2년 이상”을 “3년 이내”로 변경하고 있는 바, 이는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는 기간으로 사료됨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안 제16조)은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에 대한 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따른 비용을 해당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징수하도록 하였음.

<표> 신구조문 주요 대비표(안 제16조)

| 현 | 행 | 개 | 정 | 안 |
|---|---|---|---|---|
| <p>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5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든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 <p>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든 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든 경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든 경비의 내역이 기록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기타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현행 조례 제16조 관련 별표1의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은 다소 모호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경비 산출이 용이하지 않으며, 기준적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결과 1992년 3월 23일 조례가 제정·시행된 이래 징수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2016년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원가계산 및 운영방안 검토용역”⁵⁾을 통해 산출된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산정한 보호비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은 최초 구조비용(39,836원)과 동물 소유자가 반환해가는 평균 기간인 1~2일 간의 초기 보호비용(일당 6,303원)을 합한 금액의 범위(46,130~51,400원)에 근접하는 “마리당 5만원 이하”로 정하였음.

5) 박대근·김수영(2016.8.),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원가계산 및 운영방안 검토용역”,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특별시.

<유기동물 구조보호 원가계산 결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마리당 기준 : 원/마리)

| 구분 | | ① 구조 | ② 보호관리 | | ③ 분양 및 반환 | ④ 인도적 처리 | ⑤ 자연사 | 합 계 |
|-------------------|-----|---------------|---------|--------------|-----------------|-------------|-------|---------|
| | | | (20일) | 1일 | | | | |
| 순 용 역 원가 | 인건비 | 26,902 | 78,060 | 3,903 | 2,233 | 3,650 | 675 | 111,520 |
| | 경비 | 5,960 | 25,926 | 1,296 | - | 1,809 | 612 | 34,307 |
| 일반관리비 | | 985 | 3,119 | 156 | 66 | 163 | 38 | 4,371 |
| 이윤 | | 2,369 | 7,498 | 375 | 160 | 393 | 92 | 10,512 |
| 용역 원가 | | 36,215 | 114,605 | 5,730 | 2,458 | 6,014 | 1,417 | 160,709 |
| 부가가치세 | | 3,621 | 11,460 | 573 | 245 | 601 | 141 | 16,068 |
| 합계 (부가가치세 포함) | | 39,836 | 126,065 | 6,303 | 2,703 | 6,615 | 1,558 | 176,777 |
| 총계 (원/마리) | | 176,777원/마리 | | | | | | |

- 개정안(안 제21조)은 현행 조례에서 주로 유기동물의 입양업무를 담당하는 반려동물 분양센터에 관한 사항 대신에, 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분양,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포괄적인 동물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표> 신구조문 주요 대비표(안 제21조)

| 현행 | 개정안 |
|--|---|
| <p>제21조(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분양센터를 설치</p> | <p>제21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동물복지지원센터-----.</p> |

· 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2. 긴급보호동물의 인수, 보호, 분양 및 법 제22조에 따른 처리
3. 분양예정 동물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4. 동물보호 시민 교육 및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5. 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상담
6. 동물보호 정책의 연구 및 기획
7. 동물보호 시민운동의 지원
8.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관리 및 방역
9.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긴급보호동물의 인수는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시로 인계한 경우에 한한다.

④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홍보 및 운영 자문을 위해 비상임으로 명예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 센터장이 동물복지지원센터와 관련하여 회의 참석 또는 자문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개정안(안 제21조제2항)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존의 동물보호센터가 단순히 유기동물 구조·보호를 중심으로 동물보호사업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던 것과 달리, 기본적인 동물보호센터 업무 외에도 동물입양 사업, 동물보호 교육, 치료·보호 업무 등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동물복지지원센터 시설별 주요기능>

| 구 분 | 기 능 | 세 부 내 용 |
|--------------|-----------------|--|
| 동물병원 | 동물치료 | · 유기·유실동물중 응급동물에 대한 치료 |
| | 전염병 관리(방역) | · 전염병 검진 및 방역(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포함) |
| | 중성화 수술 | · 중성화수술(입양대상동물, 길고양이 TNR) |
| | 기타 | · 인수 받은 동물, 입양대기 동물의 건강관리 · 입양 대기 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내장형 칩) · 수의과대학과 연계 실습·자원봉사 기회 제공 |
| 반려동물 입양센터 | 긴급 보호동물 인수 | · 적절한 사육이 불가능하여 긴급보호가 필요한 동물 (피학대 동물, 사육자의 사망·구급 등) |
| | 동물입양 | · 유기·유실동물 및 긴급보호동물의 입양 관리 ·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동물 입양 활동 · 동물관련 대학과 연계 실습, 자원봉사 기회 제공 |
| | 상담 | · 인수·입양, 타인의 동물학대, 반려동물 상실 등 ·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 대처 방법 |
| 동물보호 교육센터 | 교육 | · 어린이, 학생, 반려동물 보호자, 입양희망자 대상 동물보호 교육 · 반려동물(연령별 구분) 사회화 교육 |
| 커뮤니티룸 | 민관협력 동물정책 개발 | · 민간단체 등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동물보호 활동 · 지역 주민, 동물보호활동가와 교류 및 활동 지원 (동물보호 교육 및 정보, 커뮤니티 공간 등) · 민관협력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개발 |

- 또한 홍보 및 운영 자문 역할로 무급 명예직인 명예센터장을 둘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21조 제4항)을 마련하였음.
- 그 밖의 개정사항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의 긍정성이 크고, 이에 따른 개정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별표 1]

[별표 1] <개정 2012.9.28>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

(제16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 동 물 명 | 규 격 |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
|--------|---------|-----------------------|
| 개, 고양이 | 6개월령 이하 |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
| | 6개월령 초과 |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
| 기 타 | - | 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센터장이 정함 |

나. 인건비

①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정부노임단가 기준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다.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금액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비용

가.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시장가격을 적용한다. 단, 시장가격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 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붙임 2

동물 구조·보호 및 중성화 사업 지정·위탁 현황('17. 4. 1. 기준)

| 구 분 | 주 관 부 서 | | 사 업 별 지 정·위 탁 업 체 | | | | |
|-------|-----------|-----------|-------------------------------|--------------|-------------|-----------------------------|-----------------------------------|
| | 부 서 명 | 전 화 번 호 | 동 물 보 호 센 터 | | 지 정 기 간 (년) | 길고양이 TNR 사업(1년) | |
| 계 | ○ 25개 자치구 | | ○ 동 구 협 20개구 ○ 동 물 병 원 5개구 | | | | ○ 동 구 협 공 동 8개구 ○ 동 물 병 원 17개구 |
| 종 로 구 | 일자리경제과 | 2148-2254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외2} | 031-867-9119 |
| 중 구 | 시장경제과 | 3396-5073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웰 펫 동 물 병 원 | 02-2256-7582 |
| 용 산 구 | 보건위생과 | 2199-8053 | 남산동물병원의외14 | 02-778-7582 | 2 | 남 산 동 물 병 원 | 02-778-7582 |
| 성 동 구 | 지역경제과 | 2286-6146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외3} | 031-867-9119 |
| 광 진 구 | 지역경제과 | 450-7324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외3} | 031-867-9119 |
|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2127-4274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전농종합동물병원의외2 | 02-2215-7582 |
| 중 랑 구 | 일자리경제과 | 2094-2254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동 부 제 일 동 물 병 원 | 02-434-3700 |
| 성 북 구 | 일자리경제과 | 2241-3963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외4} | 031-867-9119 |
| 강 북 구 | 지역경제과 | 901-6446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외4} | 031-867-9119 |
| 도 봉 구 | 일자리경제과 | 2091-4499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외3} | 031-867-9119 |
| 노 원 구 | 일자리경제과 | 2116-3473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25시동물병원의외1 | 02-935-0075 |
| 은 평 구 | 생활경제과 | 351-6843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Lovemypet 동물병원 | 02-382-7582 |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330-1918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신 영 동 물 병 원 | 02-3217-1081 |
| 마 포 구 | 지역경제과 | 3153-8563 | 수의사회마포구분회 | 02-3141-8274 | 3 | 수의사회마포구분회 | 02-3141-8274 |
| 양 천 구 | 일자리경제과 | 2620-4821 | 강 현 립 동 물 병 원 | 02-2642-9159 | 3 | 강 현 립 동 물 병 원 | 02-2642-9159 |
| 강 서 구 | 일자리경제과 | 2600-6284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외1} | 031-867-9119 |
| 구 로 구 | 지역보건과 | 860-2428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캥거루동물병원의외4 | 02-2066-2579 |
| 금 천 구 | 경제일자리과 | 2627-1314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강 현 립 동 물 병 원 | 02-2642-8886 |
| 영등포구 | 지역경제과 | 2670-3419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대 립 동 물 병 원 | 02-845-3368 |
| 동 작 구 | 보건위생과 | 820-1600 | 디아크 동물 병원 | 02-816-7582 | 3 | 디아크동물종합병원 | 02-816-7582 |
| 관 악 구 | 사회적경제과 | 879-5794 | 러브펫 동물 병원 | 02-837-8875 | 3 | 러브펫 동물 병원 | 02-837-8875 |
| 서 초 구 | 일자리경제과 | 2155-8757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외2} | 031-867-9119 |
|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3423-5514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강남25시동물병원 | 02-545-8575 |
| 송 파 구 | 일자리경제과 | 2147-2517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영 국 동 물 병 원 | 02-402-5746 |
| 강 동 구 | 일자리경제과 | 3425-6013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3 | 고 덕 동 물 병 원 의 외 2 | 02-429-8822 |

※ 동구협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칭함.

붙임 3**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개요****□ 사업개요**

- 위 치 : 에스플렉스센터(마포구 매봉산로 31, 지하1층)
- 규 모 : 면적 1,524.65㎡(전용면적 610.55㎡) 수용동물 100마리
- 주요시설 : 동물병원, 반려동물 입양센터, 동물보호 교육센터,
동물보호정책 연구개발 · 지역 커뮤니티룸 등
- 주요기능 : 위급동물 치료보호, 긴급구호동물 인수, 유기동물 입양,
동물보호 교육, 지역 동물보호 시민운동 지원 등
- 조성일정 : '17년 상반기 설계 및 공사, 하반기(10월) 개장
- 대상지 위치 및 현장 배치(안)



<에스플렉스센터내 센터 위치>

<지하 1층 시설 배치도>

< 예산현황 > - 시설비 국비 3억원 포함

(단위 : 천원, '17.5월말 기준)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률(%) | 비 고 |
|-----------|--------|--------|-----|
| 1,150,000 | 26,280 | 2.3 |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973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동물복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등 동물보호센터의 역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호비 규정을 개정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 신설에 따라 설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명시(안 제5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11항~제13항)
- 나. 동물의 유실·유기 예방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근거 마련(안 제7조)
- 다. 유기동물 보호 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고 지정기한을 명시(안 제8조 제3항, 제5항)
- 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동물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 보호비용 징수 범위 명시(안 제16조)

마. 적극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22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총3,917,880천원(5년간)

| 구분 | 1차년도 ('17) | 2차년도 ('18) | 3차년도 ('19) | 4차년도 ('20) | 5차년도 ('21) | 합계 |
|------|----------------|----------------|----------------|----------------|----------------|-----------|
| 소요비용 | 1,316,876 | 687,751 | 637,751 | 637,751 | 637,751 | 3,917,880 |

※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 운영관련 예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협의완료(원안동의)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 검토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 5.25. ~ 6. 24.) 결과: 별도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3)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 작성자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배진선(02-2133-764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물복지지원센터”란 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분양,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제4조제4항 중 “5년단위”를 “5년 단위”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명”을 “15명”으로, “주관부서의 장”을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을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를 “이상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5조제5항 중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를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⑫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

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복지관련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유실·유기방지”를 “유실·유기 방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동물등록대행자”를 “등록대행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 또는 장소를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동물보호명

예감시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자치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 단 중 “2년 이상으로 하며”를 “3년 이내로 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동물보호센터장”을 “동물보호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시행령”을 “시행령”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기동물보호담당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로 하여금”을 “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수의로 하여금”을 “공수의로에게”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중성화수술”을 각각 “중성화 수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구조
· 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을“(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유기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분양센터”를“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동물복지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2. 긴급보호동물의 인수, 보호, 분양 및 법 제22조에 따른 처리
3. 분양예정 동물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4. 동물보호 시민 교육 및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5. 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상담
6. 동물보호 정책의 연구 및 기획
7. 동물보호 시민운동의 지원
8. 인수공동전염병 등 질병 관리 및 방역
9.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긴급보호동물의 인수는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시로 인계한 경우에 한한다.

④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홍보 및 운영 자문을 위해 비상임으로 명예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 센터장이 동물복지지원센터와 관련하여 회의 참석 또는 자문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구청장”을 “자치구”로, “기관장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분양센터”를 “기관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로 한다.

제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무선식별장치를”을 “무선식별장치가”로,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중성화수술”을 “중성화 수술”로,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경우 : 50퍼센트.”를 “경우: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동물보호센터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을 4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을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생략)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6. (생략)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생략)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관련 업무 소관 국장-----

----- 이상으로 -----

-----.

1. (현행과 같음)

2. -----
----- 사람으 -----

3. (현행과 같음)

4.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5. 6.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위원-----
-----.

⑥ ~ ⑨ (생략)

⑩ 회의의 내용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⑪ (생략)

<신설>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
-----.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⑭ (현행 제11항과 같음)

⑫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

<신 설>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축할 수 있다.

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복지관련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

----- 유실·유기 방지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2호 서식 -----

④ ----- 등록대행자 -----

다.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
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포
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
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
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
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는 그 경위서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
입 제한)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
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특정 지역 또는 장
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 또는 장소를 별도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제1
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
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
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
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
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
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② (생략)
<신설>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
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
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
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
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
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
가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이
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동물
보호명예감시원이 참여하여야 한
다.

④ -----
----- 자치구 -----

-----.

⑤ ----- 3년 이
내로 하되, -----

-----.
-----.

로 정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자치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두 차례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생 략)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
----- 공무원에게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동물보호센터의 장 -----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

----- 시행령 -----

----- 별지 제 6호서식 -----

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3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4조(동물의 반환 등) ①,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공고가

----- .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

----- 유기동물
보호담당자-----
-----.

1. 2. (현행과 같음)

② -----

-----가-----
-----.

③ ----- 공수의
에게 -----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동물의 반환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3. (생략)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5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든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 중성화 수술 -----
----- 중성화 수술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현행과 같음)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든 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든 경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든 경비의 내역이 기록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기타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분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동물복지지원센터-----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2. 긴급보호동물의 인수, 보호, 분양 및 법 제22조에 따른 처리
3. 분양예정 동물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4. 동물보호 시민 교육 및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5. 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상담
6. 동물보호 정책의 연구 및 기획
7. 동물보호 시민운동의 지원

<신 설>

<신 설>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시
장은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분양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
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장과 동물보호센터, 동
물분양센터 및 영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3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
면대상에서 제외한다.

8.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관리
및 방역

9.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
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업

③ 긴급보호동물의 인수는 소유자
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시로 인
제한 경우에 한한다.

④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홍보 및 운
영 자문을 위해 비상임으로 명예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 센터
장이 동물복지지원센터와 관련하
여 회의 참석 또는 자문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

----- 자치구 ----- 기관과 동
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수수료의 감면) -----

-----.

-----.

| | |
|--|--|
| <p>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등록하는 <u>경우</u> : 전액</p> <p>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u>경우</u> : 전액</p> <p>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u>경우</u> : 50퍼센트</p> <p>4. <u>무선식별장치를</u>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u>경우</u> : 50퍼센트</p> <p>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u>경우</u> : 50퍼센트</p> <p>6. <u>중성화수술</u>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u>경우</u> : 50퍼센트</p> <p>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u>경우</u> : 50퍼센트. 다만, 3마리부터 적용</p> | <p>1. ----- ----- <u>경우</u>: ----</p> <p>2. ----- - <u>경우</u>: -----</p> <p>3. ----- ----- <u>경우</u>: -----</p> <p>4. <u>무선식별장치가</u> ----- ----- <u>경우</u>: -----</p> <p>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u>경우</u>: -----</p> <p>6. <u>중성화 수술</u>----- <u>경우</u>: -----</p> <p>7. ----- <u>경우</u>: 50퍼센트 <단서 삭제></p> |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조례안 제21조 제1항 동물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조례안 제22조 제1항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 복지와 동물 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영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근거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 기준가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추계기간 :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17~'21)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17) | 2차년도 ('18) | 3차년도 ('19) | 4차년도 ('20) | 5차년도 ('21) | 합계 |
|-------------------------------|--------|-----------------|-----------------|-----------------|-----------------|-----------------|-----------|
| 세출 | ○ 초기비용 | 950,000 | - | - | - | - | 950,000 |
| | ○ 연간예산 | 366,876 | 687,751 | 637,751 | 637,751 | 637,751 | 2,967,880 |
| | 소계(b) | 1,316,876 | 687,751 | 637,751 | 637,751 | 637,751 | 3,917,880 |
| <input type="checkbox"/> 총 비용 | | 1,316,876 | 687,751 | 637,751 | 637,751 | 637,751 | 3,917,88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구분 | 국비 | 300,000 | 0 | 0 | 0 | 0 | 300,000 |
| 시비 | 지방세수입 | 1,016,876 | 687,751 | 637,751 | 637,751 | 637,751 | 3,617,880 |
| | 세외수입 | | | | | | |
| | 지방채 등 | | | | | | |
| | 민간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1,316,876 (300,000) | 687,751 | 637,751 | 637,751 | 637,751 | 3,917,880 (300,000) |

5. 덧붙이는 의견

- 서울시내 발생하는 유기동물중 응급동물의 치료, 보호와 입양 및 시민 교육을 위한 시설로 향후 유기동물 발생 추이에 따라 소요 비용이 증감할 수 있음

6. 작성자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배진선(02-2133-7648)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초기비용 : 시설 조성비(시설비 및 동물병원 장비 구입비 등)

2. 운영비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인 건 비 : 시설팀장 1, 7급(행정,수의) 2명, 시간선택제다급 1명,
공무직 1명

| 연도 | 항 목 | 내 역 | 예상금액 (천원) | 산출기초 |
|------|----------------------|--------------|--------------|--|
| | 총계 | | 3,917,880 | |
| | 계 | | 1,316,876 | |
| 2017 | 동물복지지원 시설 조성사업 | 시설비 | 790,000 | ▶센터 조성 설계 및 공사비 - 790,000천원*1식 = 790,000천원 |
| | | 시설부대비 | 10,000 | ▶센터 조성 시설 부대비 - 10,000천원*1식 = 10,000천원 |
| | | 자산및물품 취득비 | 150,000 | ▶동물의료용 장비 구입비 - 100,000천원*1식 = 100,000천원 ▶동물 입양센터 및 교육용 장비 - 50,000천원*1식 = 50,000천원 |

| 연도 | 항 목 | 내 역 | 예상금액 (천원) | 산출기초 |
|------|----------|-----|--------------|--|
| | | 계 | 950,000 | |
| | 시설 운영 | 인건비 | 166,876 | ▶인원 : 시설팀장(5급)외 9명 - 시설팀장 : 4,214천원*1명*6개월 = 25,284천원 - 7급 : 2,808천원*2명*6개월 = 33,696천원 - 시간선택다급 : 24,847천원*1명/2 = 12,424천원 - 공무원직 : 2,652천원*6명*6개월 = 95,472천원 ※ 2017년 서울시 인력운영비 기본급 기준(재무과 예산서) |
| | | 운영비 | 150,000 | ▶동물복지지원시설 관리비 - 일반관리비 1600㎡*6천원*6개월 = 57,600천원 - 변동관리비 2,400천원*6개월 = 14,400천원 ▶센터운영용품(사료,약품,패드 등 동물관리물품) - 50,000천원*1식 = 50,000천원 ▶센터내 안내판 및 설명패널 등 제작 - 28,000천원*1식 = 28,000천원 |
| | | 사업비 | 50,000 | ▶센터 개장식 및 동물 입양 등 행사 - 20,000천원*1식 = 20,000천원 ▶센터내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 30,000천원*1식 = 30,000천원 |
| | | 소계 | 366,876 | |
| 2018 | 계 | | 687,751 | |
| | 시설 운영 | 인건비 | 333,751 | ▶인원 : 시설팀장(5급)외 9명 - 시설팀장 : 4,214천원*1명*12개월 = 50,568천원 - 7급 : 2,808천원*2명*12개월 = 67,392천원 - 시간선택다급 : 24,847천원*1명 = 24,847천원 - 공무원직 : 2,652천원*6명*12개월 = 190,944천원 ※ 2017년 서울시 인력운영비 기본급 기준(재무과 예산서) |
| | | 운영비 | 244,000 | ▶동물복지지원센터 관리비 - 일반관리비 1,600㎡*6천원*12개월 = 115,200천원 - 변동관리비 2,400천원*12개월 = 28,800천원 ▶센터운영용품(사료,약품,패드 등 동물관리물품) - 100,000천원*1식 = 100,000천원 |
| | | 사업비 | 110,000 | ▶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입양, 교육, 홍보) 개발 - 50,000천원*1식 = 50,000천원 ▶유기동물 입양 행사 - 500천원*4회*10개월 = 20,000천원 ▶센터내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 200천원*20회 = 40,000천원 |
| | | 소계 | 687,751 | |
| 2019 | 계 | | 637,751 | |
| | 시설 운영 | 인건비 | 333,751 | ▶인원 : 시설팀장(5급)외 9명 - 시설팀장 : 4,214천원*1명*12개월 = 50,568천원 - 7급 : 2,808천원*2명*12개월 = 67,392천원 - 시간선택다급 : 24,847천원*1명 = 24,847천원 - 공무원직 : 2,652천원*6명*12개월 = 190,944천원 ※ 2017년 서울시 인력운영비 기본급 기준(재무과 예산서) |
| | | 운영비 | 244,000 | ▶동물복지지원센터 관리비 |

| 연도 | 항 목 | 내 역 | 예상금액 (천원) | 산출기초 |
|------|----------|-----|--------------|---|
| | | | | - 일반관리비 1,600㎡*6천원*12개월 = 115,200천원 - 변동관리비 2,400천원*12개월 = 28,800천원 ▶센터운영용품(사료, 약품, 패드 등 동물관리물품) - 100,000천원*1식 = 100,000천원 |
| | | 사업비 | 60,000 | ▶유기동물 입양 행사 - 500천원*4회*10개월 = 20,000천원 ▶센터내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 200천원*200회 = 40,000천원 |
| | | 계 | 637,751 | |
| 2020 | 계 | | 637,751 | |
| | 시설 운영 | 인건비 | 333,751 | ▶인원 : 시설팀장(5급)외 9명 - 시설팀장 : 4,214천원*1명*12개월 = 50,568천원 - 7급 : 2,808천원*2명*12개월 = 67,392천원 - 시간선택다급 : 24,847천원*1명 = 24,847천원 - 공무원 : 2,652천원*6명*12개월 = 190,944천원 ※ 2017년 서울시 인력운영비 기본급 기준(재무과 예산서) |
| | | 운영비 | 244,000 | ▶동물복지지원센터 관리비 - 일반관리비 1,600㎡*6천원*12개월 = 115,200천원 - 변동관리비 2,400천원*12개월 = 28,800천원 ▶센터운영용품(사료, 약품, 패드 등 동물관리물품) - 100,000천원*1식 = 100,000천원 |
| | | 사업비 | 60,000 | ▶유기동물 입양 행사 - 500천원*4회*10개월 = 20,000천원 ▶센터내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 200천원*200회 = 40,000천원 |
| | | 계 | 637,751 | |
| 2021 | 계 | | 637,751 | |
| | 시설 운영 | 인건비 | 333,751 | ▶인원 : 시설팀장(5급)외 9명 - 시설팀장 : 4,214천원*1명*12개월 = 50,568천원 - 7급 : 2,808천원*2명*12개월 = 67,392천원 - 시간선택다급 : 24,847천원*1명 = 24,847천원 - 공무원 : 2,652천원*6명*12개월 = 190,944천원 ※ 2017년 서울시 인력운영비 기본급 기준(재무과 예산서) |
| | | 운영비 | 244,000 | ▶동물복지지원센터 관리비 - 일반관리비 1,600㎡*6천원*12개월 = 115,200천원 - 변동관리비 2,400천원*12개월 = 28,800천원 ▶센터운영용품(사료, 약품, 패드 등 동물관리물품) - 100,000천원*1식 = 100,000천원 |
| | | 사업비 | 60,000 | ▶유기동물 입양 행사 - 500천원*4회*10개월 = 20,000천원 ▶센터내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 200천원*200회 = 40,000천원 |
| | | 계 | 637,751 | |